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보훈공단 임원 관련 규정 정비〉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24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보훈공단 임원 관련 규정 정비 ·	2

I. 제안경위

1. 제출자 : 한창민의원 등 11인
2. 제출일 : 2024. 10. 22.
3. 회부일 : 2024. 10.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 구성에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 구성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이사 정원을 1명(현행 6명에서 7명) 증원하려는 것임 (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 2. (생략) 3. 비상임이사 <u>6명</u> 4. (생략) ② (생략)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u>제3호 및 제4호에</u>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8조(임원)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u>7명</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u>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u>

④・⑤ (생략)	<u>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u> ④・⑤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보훈공단 임원으로 이사장 1명, 4명 이내의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 보훈공단의 비상임이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보훈공단의 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국가유공자등 관련 단체 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8조(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4명 이내
3. 비상임이사 6명
4. 감사 1명
- ② (생략)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1. 국가보훈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명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국가유공자등 관련 단체 임원 1명

④·⑤ (생략)

□ 그런데 2022년 2월 3일 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보훈공단도 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비상임이사 선임 시 노동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바,³⁾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판단됨.⁴⁾

□ 이사회 정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이사회의 정원은 15명인바⁵⁾, 현재 보훈공단 이사회 정원은 11명⁶⁾으로, 개정안과 같이 추가적으로 1명(비상임이사)을 증원하여도 정원상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제3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노동이사제 도입에 법 개정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은 7개 기관으로, 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개정안이 제출·계류 중임.

<법 개정 필요 공공기관>

- ▶ 보훈부 산하(1)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복지부 산하(3)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 ▶ 고용부 산하(3) :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성) ①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한정한다.
3. 제2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6) 참고로, 감사는 이사회에 포함되지 아니함.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 국가보훈부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훈
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